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79

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문금주・박용갑・이정문

박 정ㆍ이학영ㆍ한민수

강준현 · 서삼석 · 오세희

권칠승 • 박해철 • 정진욱

권향엽・황정아・조인철

문대림 • 황명선 • 채현일

최민희 • 이병진 • 백승아

허성무 • 박희승 • 전진숙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·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.

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 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,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함.

한편, 2021년 아동·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'위장수사'가 도입되었는데, 위장수사의 한 기법인 신분위장수사는 수사 착수 시 검 찰을 경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, 신속한 수사가 어렵 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). 법률 제 호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의3제3항 중 "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,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"를 "법원에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"검사에게 신청하고,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"를 "법원에 신청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5조의3(아동·청소년대상 디	제25조의3(아동・청소년대상 디		
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	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		
차) ①·② (생 략)	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	③		
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<u>검사에</u>	법원에		
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	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		
를 신청하고, 검사는 법원에 그	신청한다.		
허가를 청구한다.			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		
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	8		
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			
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			
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			
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			
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			
검사에게 신청하고, 검사는 법	<u>법원에 신청한다</u>		
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. 이			
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			
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			